

철거등 통지서

제	호
소유자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대상 건축물 현황	[] 허가 번호, []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
철거등 내용	철거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 사유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예정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이행기관 그 밖에 필요한 내용(철거 등 필요한 조치의 기한)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제2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